

이 문서는 고용기준법 2000(Employment Standards Act, 2000) 21.1 항에 의거하여 고용기준국장이 제작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숙지하십시오. 의문점이 있으면 노동부(Ministry of Labour)에 문의하십시오.

다음 내용은 아래에 대한 온타리오 주의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 근무 시간
- 초과근무 수당

## 일간 최대 근무 시간

고용인은 다음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루 8 시간  
또는
- 규정된 근무 시간이 8 시간 이상일 경우, 그 근무 시간

고용인이 원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고용주와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간 최대 근무 시간

고용인은 주당 48 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인이 원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고용주와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고용주는 노동부 고용기준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를 원하지 않으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겠다고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 주당 48 시간(최고 60 시간) –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한, 고용주는 고용기준국장의 허가를 신청한 날짜에서 30 일 뒤에 고용인에게 초과근무를 시작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당 60 시간 – 고용인은 고용주가 고용기준국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주당 60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기준국장이 허가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고용인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기준국장 허가 신청서를 고용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고용기준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서를 고용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고용기준법 2000 (Employment Standards Act, 2000)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예외 및 특수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Ministry of Labour)에 문의하십시오(무료 전화 1-800-531-5551).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2 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일간 또는 주간 초과근무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에게 적절한 통보를 함으로써 **고용주도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 수당

고용인이 주당 44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그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최소 1.5 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인이 주당 48 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고용주는 주당 44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고용주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초과근무 수당을 산정할 목적으로 2 주 이상 근무 기간에 대한 평균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기준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정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합의서는 시한이 있어야 하며,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취소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 소속 고용인

노동조합에 소속된 고용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고용인을 대리하여 고용주와 합의를 합니다.

## 휴식 및 식사 시간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최소한 다음을 허용해야 합니다.

- 일당 11 시간 연속 휴식. ‘1 일’은 24 시간을 말하며 달력의 1 일이 아닐 수 있음.
- 근무교대 사이마다 8 시간의 휴식(총 교대근무 시간이 13 시간 이하이거나, 고용인과 고용주가 별도로 서면 합의한 경우는 제외)
- 주당 24 시간, 또는 2 주당 48 시간 연속 휴식

고용인은 최대 5 시간 근무한 뒤 30 분의 식사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용주와의 합의를 통해 이 식사 시간을 두 번의 휴식 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인의 권리 보호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인을 위협하거나, 해고하거나, 징직시키거나, 감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 고용인이 일당 또는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 고용인이 일당 또는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 고용인이 근무하겠다고 합의한 초과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 고용인이 ESA 에 따른 권리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노동부(Ministry of Labour)에 연락하십시오. 노동부 직원은 여러분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의문을 풀어주며 불만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노조 소속 고용인은 노동부에 연락하기 전에 노조 대표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 연락처

- 노동부 고용기준정보센터(Ministry of Labour Employment Standards Information Centre)에 416-326-7160, 무료전화 1-800-531-5551, 또는 청각 장애자용 TTY 1-866-567-8893 으로 연락하십시오.
- ServiceOntario Government Information Centre 를 방문하십시오.
- [www.labour.gov.on.ca/english/](http://www.labour.gov.on.ca/english/)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이메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